

의안번호	2126544
의 퇴 인	진선미의원
회 답 일	2023. 06. 07.
추계번호	23D2487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□ 이송정보의 기록 및 수집·관리(안 제74조의4 신설)

- 시·군·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제52조¹⁾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이송에 관한 정보를 기록 및 수집·관리하여야 함
 - － 사상자의 성명, 연락처, 주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적사항
 - － 사상자의 응급처치 기록
 - － 사상자를 의료기관 및 임시영안소 등에 이송한 기록
 - － 사상자의 이동 동선 및 현재 위치
 - 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□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

1) 제52조(긴급구조 현장지휘) ① 재난현장에서는 시·군·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한다. 다만,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.

1. 재난현장에서 인명의 탐색·구조
2.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·장비의 배치와 운용
3. 추가 재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
4.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임무의 부여
5.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
6. 긴급구조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
7. 현장접근 통제, 현장 주변의 교통정리, 그 밖에 긴급구조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~⑪ 생략

Ⅲ. 미첨부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시·군·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재난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이송에 관한 정보를 기록 및 수집·관리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 - 현행법에는 재난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이송에 관한 정보의 기록 및 수집·관리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
 - 개정안에 따라 재난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이송에 관한 정보의 기록 및 수집·관리를 하는 경우, 해당 정보의 기록 및 수집·관리를 위한 임시 인력 활용 또는 관련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그 방법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- 추가재정소요 추계를 위해서는 재난 사상자 수, 응급처치 및 이송에 관한 정보를 기록 및 수집·관리하는 방식, 임시 인력 또는 정보관리시스템 활용 여부, 각 방식에 따른 인력 규모 또는 정보관리시스템 사업 내용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
- 그러나 재난 종류별 발생 확률, 재난 종류별 사상자 수, 응급처치 및 이송에 관한 정보를 기록 및 수집·관리하기 위한 임시 인력 활용 또는 정보관리시스템 등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결정, 임시 인력 활용 시 인원과 기간,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시 사업의 내용과 범위 등을 검토하거나 예측한 자료 등이 없어 향후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추계가 불가능함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국회예산정책처	행정비용추계과
과장	오명희
추계세제분석관	이미연
연락처	02-6788-4661
	mylee@nabo.go.kr
